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  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‘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Ⅱ)’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,  
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및  
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  
  
우선공급 대상의 범위를 ‘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’에서 ‘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)’로 정비하였고,  
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 
  
또한,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
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 
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
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